

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김범기 의원외 7인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9년 4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4월 17일

3. 제안이유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(2009. 2. 6, 법률 제9444호)으로 인한 법률조문 개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지정 제안 조건을 완화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지정의 제안조건 완화(안 제6조)
  - 추진위원회 제안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 삭제
-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(안 제28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요건을 삭제하여 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는사항으로
- 충북을 제외한 타시도 조례를 검토한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안이 가능토록 되어 있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